

보도 일시	배포 즉시	배포 일시	2023. 3. 17.(금)
담당 부서	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	책임자	과 장 김동현 (044-202-8901)
		담당자	사무관 이재화 (044-202-8914)
	군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	책임자	과 장 김용태 (063-450-0531)
		담당자	담 당 이 환 (063-450-0532)

세아베스틸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은 산업안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되었고, 사업주의 작업중지 권고 등을 활용하여 안전 확보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.

1. 주요 기사 내용

□ 3.16.(목) 뉴시스, “고용부, 근로자 사망 세아베스틸에 왜 작업중지 명령 안내했나”

-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“군산 소룡동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발생했던 중대재해 사건에서 당일 현장조사를 나간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다”면서 “세아베스틸은 이미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음에도 노동부는 지난 5일이 되어서야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시행했다”고 지적했다.

2. 설명 내용

□ 기사에 언급된 “이미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음에도 노동부는 지난 5일이 되어서야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시행했다”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

-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*가 발생하였을 때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음

*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

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

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

-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3.2.(목) 현장 확인 시에는 재해자가 병원에서 치료 중이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따른 사업주의 작업중지를 권고하였고,
 - 세아베스틸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의 권고를 받아들여 해당 작업을 중지하였음
 - 이후, 재해자 중 1명이 3.5.(일)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,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음
 - 기사 내용이 고용노동부가 세아베스틸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었음에도 작업중지 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오해가 없도록 설명드립니다
- 그리고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은 이번의 중대재해 발생으로 최근 1년 내 3회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하여 특별감독 대상이므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히 특별감독할 계획임